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354 회)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17년 2월 일

규칙 개정 방침결정문

1. 규칙명 :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2. 개정이유

-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에 따라 회의규칙에 전자투표 표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표결할 때에는 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(안 제46조제1항).
- 의장의 제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(안 제46조제2항).
-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, 의원 자격 심사, 징계, 인사와 관련된 안건, 재의 요구의 건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(안 제46조제4항).

4. 규칙개정안 : 붙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7. 관련법령 : 붙임

8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.

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의장의 제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.

제46조제3항 본문 중 “다른 의견의 유무를 확인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”을 “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는”으로, 같은 항 후단 중 “다른 의견이”를 “이의가”로, “이나”를 “또는”으로 한다.

제4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, 의원 자격 심사, 징계, 인사와 관련된 안건, 재의 요구의 건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6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거나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.</p>	<p>제46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.</p>
<p>②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이나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.</p>	<p>② 의장의 제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.</p>
<p>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의 유무를 확인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. 그러나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.</p>	<p>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<u>이의 유무를 물어서</u>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. 그러나 <u>이의가</u>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.</p>
<p>④ <u>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 투표로 한다.</u></p>	<p>④ <u>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, 의원 자격 심사, 징계, 인사와 관련된 안건, 재의 요구의 건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.</u></p>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- 제64조의2(표결의 선포 등) ①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,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.
- ②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.